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6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이건태・박지원・이수진

황 희·장종태·조인철

송재봉 • 이개호 • 양문석
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 게 할 수 있음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은 헌법상 권리로서,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 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.

그런데 실무상 토·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,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,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.

이에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(안 제34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정시설의 장은 토요일, 일요일 및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제1항의 접견, 교통, 진료를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,	제34조(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,
교통, 진료) (생 략)	교통, 진료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
	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교정시설의 장은 토요일, 일
	요일 및 「공휴일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
	휴일에도 제1항의 접견, 교통,
	진료를 보장하고 지원하여야
	<u>한다.</u>